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2023.09.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동원수산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윤리적인 문화를 정립하고 투명경영 정착 및 안정화 기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이란 경영활동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나아가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기정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회사 경영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회사의 임원, 일반직원, 계약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입찰계약자,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2장 윤리경영 주관부서

제4조 (윤리경영 주관부서)

① 회사는 윤리경영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며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한다.

② 윤리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비윤리행위 신고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3.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교육 실시 및 실천 활동 전개
4. 윤리경영활동 정기적 점검 및 정보 공개
5. 그 밖에 윤리경영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비윤리행위 신고

제5조 (신고제도 운영)

윤리헌장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문화 조성 및 비윤리적인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 (신고의무)

-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정 및 강령에 저촉되는 행위(이하 "비윤리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윤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외부 이해관계자 및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 ① 윤리경영 주관부서인 총무부는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
 2. 정부당국, 사회단체 또는 언론매체 등으로부터 회사 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 ② 제1항 지침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조사결과는 사내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공지된다.
- ④ 조사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5년간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보호)

- ① 윤리경영 주관부서인 총무부는 신고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신고처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전항의 신고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를 처한다.
- ③ 비윤리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신고보장 및 포상)

- ①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총무부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무부서장은 신고에 의해 조사한 결과 비윤리행위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업무부조리 개선 등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자를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의 감면)

- ①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인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최초 혹은 두 번째로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지침에 의해 감면되는 자의 범위, 감면의 기준·정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경영 인식제고와 이행력 강화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를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지침에 의한 교육 시행 후 윤리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사회 봉사)

① 회사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